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7차)

일부 변경사항(2차) 연장 안내

2021. 1. 29.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h·well
국민건강보험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지침(7차)' 일부 변경사항 연장 안내

□ 관련근거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지침(7차)"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827호, 2020. 6. 29.)

□ 목적

○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현장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7차) 일부 변경(2차)」 **사항의 적용기간을 2.28일까지 1개월 간 연장하고자 함**

□ 기본원칙

○ **동 지침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20.12월~'21.2월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임**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인정기간 확대가 가능하며 동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특례 기준은 7차 지침에 준해 적용함

<table>
<tr><th>연번</th><th>특례별 구분</th><th>7차 일부변경(2차) 지침 주요 내용</th><th>적용월</th></tr>
<tr><td>1</td><td>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td><td>* (예방적 격리) 최대 10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td><td rowspan="6">12월~
`21.2월</td></tr>
<tr><td>2</td><td>주야간보호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 기준</td><td>* 휴원 이행기관
<table><tr><td>구분</td><td>○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정원의 70%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td></tr><tr><td>최소
이용일수</td><td>○ 전월 기준 급여계약 통보자 中 2020. 11월 중 최소 1일 이상 이용자</td></tr><tr><td>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td><td>○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전액 산정
○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30% 초과~50%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40% 전액 산정
○ 긴급돌봄 이용자가 정원의 50% 초과~70%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20% 전액 산정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td></tr></table></td></tr>
<tr><td>3</td><td>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td><td>* `20.11월(급여제공월) 기준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받은 방문형 종사자가 `20.12월~`21.2월에 30분 이상~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br><b>- `20.11월 기준 산정된 장기급속장려금 지급</td></tr>
<tr><td>4</td><td>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td><td>* `20.12.1. 이후 종료되는 기 발급된 방문간호지시서<br><b>- `20.12.1.~`21.2.28. 유효기간 연장하여 급여비용 인정</td></tr>
<tr><td>5</td><td>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특례</td><td>* 방문상담(1회)을 원칙으로 하되,
- 수급자(보호자) 거부 시 유선상담(주1회 또는 월4회) 대체 인정</td></tr>
</table>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 변경사항

구분	7차 지침	7차 일부변경(2차) 지침
적용월	2020.7.~	2020.12.~2021.2. (3개월간)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	* (확진자) 완치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인정 * (격리자) 최대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 **(예방적 격리) 최대 7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 (확진자) 완치시까지 1일 최대 8시간 근무인정 * (격리자) 최대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 **(예방적 격리) 최대 10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
주야간보호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산정 기준	* 휴원 이행기관 - 휴원 권고 연장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20.2.29. 지자체 신고 기준의 정원 범위 내 **'20.2 기준의 월 평균 현원 대비** 해당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30%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 - (대상) 전월 기준 급여계약 통보자 中 **'20.2월 기준** 최소 1일 이상 이용자 - (비용)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60% (공단이 전액 부담)**	* 휴원 이행기관 -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에서 정원 대비 해당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70% 이하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 - (대상) 전월 기준 급여계약 통보자 中 **'20.11월 기준** 최소 1일 이상 이용자 - (비용)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20~60% (공단이 전액 부담)** ①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정원의 **30%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 전액 산정** ②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정원의 **30% 초과~50%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40% 전액 산정** ③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정원의 **50% 초과~70% 이하** 시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20% 전액 산정**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	-	* `20.11월(급여제공월) 기준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받은 방문형 종사자가 `20.12월~`21.2월에 30분 이상~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20.12.~`21.2.(3개월간) 11월 기준 산정된 장기급속장려금 지급**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	-	* `20.12.1. 이후 종료되는 기 발급된 방문간호지시서 - **`20.12.1.~`21.2.28. 유효기간 연장하여 급여비용 인정**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특례	* 방문상담(1회)을 원칙으로 하되, -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 · 격리 시 유선 상담(월 2회) 대체 - **수급자(보호자) 거부 시 유선상담(주 1회) 대체만 인정**	* 방문상담(1회)을 원칙으로 하되, - 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확진 · 격리 시 유선 상담(월 2회) 대체 - **수급자(보호자) 거부 시 유선상담(주1회 또는 월4회) 대체 인정**

1.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근무시간' 인정 특례기준 변경

○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예방적(코호트)격리의 필요성이 증가 됨에 따라 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 등이 **예방적(코호트)격리** 또는 시설장의 판단 하(주야간보호 휴원 등)에 일부 종사자를 **적극적 업무 배제**하는 형태로 운영한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시간 인정 가능 일수 변경**

현행		변경
1일 8시간,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1일 8시간,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인정**

○ **(적용월)** 변경된 기준은 **'20.12월~'21.2월 급여제공분에 한하여 인정**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다른 **'병가일수'와 별도산정 가능('예방적 격리' 코드)**하며, 해당 사유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를 인정 받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한 경우 고시 제66조에 따른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됨

○ **(인정대상)** **▲예방적(코호트) 격리**(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격리조치) **▲ 적극적 업무배제**(종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은 아니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증상 모니터링 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 일정기간 업무배제가 필요한 경우)

○ **(인정기준)** '예방적(코호트) 격리' 또는 일부 종사자의 '적극적 업무배제'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전에 반드시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

* 대상 종사자, 해당 직종, 실시기간, 필요사유(상황), 관련 증빙내용, 대체 인력운영 계획 등 포함(7차 지침 붙임 참조)

2.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에 따른 특별 지침 변경

○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주야간보호기관이 휴원 권고를 받고 실제 휴원 이행 시,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인정 확대** 운영

* 휴원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 제공기준은 기존 7차 지침에 따름

○ **(기본원칙)** 휴원 안내 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기관 중 **정원 대비** 해당 일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이 **70% 이하**(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해당하는 일자의 미이용자에 대해 '코로나 특례비용' 산정

* 기존 고시(제32조제3항) '미이용일 급여비용' 월 5일은 고시 기준 충족 시에 산정 가능하므로 기관이 선택하여 청구 가능

○ **(대상)** **'20.11월** 최소 1일 이상 해당 기관에서 실제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가 미이용한 일자만 적용

* 20.11.1.~11.30. 기간내 단 1일이라도 실제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는 산정 불가

○ **(인정비용)** 전월 말일 기준 공단에 해당 수급자의 급여일정이 적기 통보된 일자(월~금요일(근로자의 날 포함), 공휴일 제외)에 미이용 시 **등급별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20%~60%** 차등 지급(본인부담금 포함)

* 반드시 전월 말 기준 적기통보 내역(일정등록 포함)만 산정 가능하며, 당월 수정(추가) 통보 건은 산정 불가(사망일, 해외출국일 적용불가)

*** 일자별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에 따른 인정비용 세부기준**

구분	해당 일 정원 대비 긴급돌봄 이용자 비율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70% 이하
미이용자 1일당 인정비용 (이용예정 급여비용 기준)	60%	40%	20%
	본인부담금 포함한 전액 공단 지급		

○ **(적용월)** 변경된 기준은 **'20.12월~'21.2월 급여제공분에 한하여 인정**

○ **(본인부담금)** 수급자 비용 추가 부담 불가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수납

○ **(월한도액)** 미포함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은 현행대로 포함됨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해당 월 '실제 이용한 급여비용'과 '미이용일 산정비용'(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및 '코로나 특례비용')의 합산한 금액이 해당 월 월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3. 방문형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특례

○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해 방문형 급여를 일시 중단하는 수급자가 증가하여 타의로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 (대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고시 제11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 (인정기준) '20.11월 (급여제공월) 기준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받은 대상자가 '20.12월~'21.2월에 각각 30분 이상 ~ 6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산정금액) '20.11. (급여제공월) 기준 산정된 장기근속장려금

※ 장기근속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에는 해당 월 미포함.

- (적용월) '20.12.~'21.2. (3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4.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연장

○ 방문간호 시설장이 수급자의 면역력 저하 등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아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 연장

- (대상) 유효기간이 12.1. 이후 종료되는 기 발급된 방문간호지시서

- (적용월) '20.12.1.~'21.2.28. (3개월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급여비용 인정함

※ 수급자의 상태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함

5.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 특례기준 변경

○ 사회복지사가 매월 계획한 방문상담 일정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수급자의 방문거부** 시 **대체 인정하는 유선 상담기준 변경**

현행		변경
방문상담(월 1회)을 유선상담(주 1회)으로 대체 인정 *급여제공 중(급여제공시간) 주 1회(월~일요일 기준) 유선상담(수급자, 종사자)하여야 인정함.	⇒	유선상담 대체 인정횟수를 주 1회에서 **주 1회 또는 월 4회로 변경** (유선 상담간격은 가능한 7일 이상 되도록 노력) * **급여제공 중(급여제공시간) 주 1회 또는 월 4회 유선상담하고** 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기재**

○ (적용월) **'20.12.~'21.2. (3개월간)** 급여제공월 기준

○ **월 초 사전조사를 통해** 수급자가 코로나-19 확산 등 **감염 우려로 방문상담 거부 시, 주 1회 또는 월 4회** 실시한 **유선상담도** 방문상담(월 1회)으로 인정

* 수급자(보호자) 거부시 방문상담이 불가한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사실관계 기록**(세부사항 별지 제24호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을 보관

☞ **방문요양 기관은 월 초에 수급자의 방문상담 거부 여부를 사전에 파악 후 계획대로 유선상담을 실시하여 수급자 돌봄 공백 발생 등을 예방하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특례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해당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이외의 내용(코호트 격리,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사례별 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문인력 배치 의무 특례)은 기존 7차 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침 종료 후에는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7차)' 적용 예정**